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1.>

사행기구판매업 [ ]신규 [ ]조건부 허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5일

신청인	성 명	주민등록번호
	주 소 (전화번호 :)	
신청 내용	소재지 (전화번호 :)	
	영업의 종류	영업소명(상호)
	제조 및 판매품목	
	영업설비의 개요	
	시설완료 예정일	

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13조제2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·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경찰청장 · 시·도경찰청장 귀하

첨부서류	시설명세서 1부	수수료 50,000원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사실조사 및 확인	→	내용검토	→	내용검토	→	허가·통보
(신청인)		(경찰서)		(시·도경찰청)		(경찰청)		(신청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